

제415회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6월20일(목)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8)

상정된 안건

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8) 1

(10시39분 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사일정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소위원회 회의에 이어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또 법무부차관이 다시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며 하루속히 시급한 민생법안 심사에 참여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법안1소위는 지난번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법안 보충 내용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가 이루어졌고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가급적 오늘 1소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나 혹은 법무부차관,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 면 지금이라도 출석해서 의견을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순직 해병 사건 관련 특검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8)

(10시42분)

○소위원장 김승원 의사일정 제1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해당 법률안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심우정 차관은 또다시 불참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법무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소위원회뿐만 아니라 법사위

차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발언하실 분이 계실까요?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온 세상의 관심이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에 쏠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가 입법청문회를 한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사건 관련해서 입법청문회를 한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대해서 오늘 특검법을 소위에서 통과 시킨다라고 하는 관심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법사위에 그리고 오늘 소위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국힘당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1년씩 양보해 가며 하자라고 하는 엉뚱한 정치적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들어오고 싶을 텐데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 과정에도 대통령실이 개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온 국민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힘당이 국회 안에 들어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들어와야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결석입니다. 소위 결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것은 대통령실과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해 보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그렇게 의견을 표명했다면 그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법무부, 국민의 놀을 먹고……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삼권분립 하에서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이 자리에 법무부의 심우정 차관이 오지 않았다면요, 지난 번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차관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제 법무부차관, 차관 그만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도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잘못 내리고, 법무부장관도 출석하지 않고 법무부차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예가 제대로 있습니까?

저는 법무부차관, 차관의 자격 없고 차관 자리 당장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모두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심우정 법무부차관은 다시 국회에 와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했다, 사과한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지 않는다면, 향후 법무부가 위급한 법안이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요청하는 법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법무부차관 여기 출석할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출석 금지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왜 국힘당이 대패했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국힘당이 정신 차리고 심우정 법무부차관 그리고 법무부장관 박성재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단 한 사람, 대통령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전횡하라고 자리를 준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삼권분립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지요. 전횡하는 전제군주의 역할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저희도 또 들었습니다. 오늘 이 불편한 상황을 법무부에게 다시 확

실하게 전달해 주시고요. 법적·정치적·도덕적 책임 물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법원행정처 배형원 차장께서 나온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의미를 두고 법원행정처의 뭐라 그럴까, 의미를 두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어제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그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무엇보다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민에 봉사할 의무가 있는 공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고 심의할 때 행정부인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그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공복인 그런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신의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출석을 해서 자기 부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어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국회에 출석해서 자신의 견해를, 부처의 견해를 밝혀야 되는 법무부차관께서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국회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현재 국회의 출석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생각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반드시 지우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소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1소위는 지난 회의 때 채 해병 순직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그런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의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그중에 일부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대통령의 거부 사유를 일부 수용해서 추천 방식에 좀 변동을 준다든가 그렇게 특검이 합의가 되어 통과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또 대통령 거부 사유가 아무 이유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에 대해서도 지난 1소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소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주셨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이 언론보도에 따라 계속 짚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원래 발의된 특검법안에는 특검의 수사 기간을 70일로 했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므로 더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따라 특검이 30일을 더 자의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항에 대한 검토도 오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브리핑과 피의사실 공표 사이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위원님의 제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오늘 또 토론을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나 혹은 법무부차관은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서 의견을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1소위의 논의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을 파악하고 의견을 줘야 1소위에서, 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참석도 안 하고 의견도 안 주고 21일 전체회의를 통해서 법안이 통과됐을 때 만연히 거부권만 행사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한다면 국민의 정말 수많은 질타와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출석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스케치를 마치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잠깐……

○소위원장 김승원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언론인들 계시는 자리에서 한 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요, 누누이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식으로…… 아니, 자기 밑에 있던 부하직원이 자신이 지시한 일로 사망하게 되면 당연히 사단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당연히 책임져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발을 빼 왔어요. 그리고 이 특검도 그렇고 모든 일의 정점에 또 임성근이라고 하는 사단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장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정황이 나타나서 사실은 특별검사까지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대통령실과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 등은 이 임성근이라고 하는 사단장을 왜 이렇게 감싸고 도나 이런 게 모든 국민의 의문이에요. ‘도대체 무슨 관계지?’라고 하는 의문인데.

어제 또 하나의 언론보도와 녹취가 드러났어요. 어제 포7대대장 이 모 중령 그리고 포11대대장 최 모 중령 둘이 이야기하는 녹취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녹취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임성근 사단장이 대대장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대대장들이 네 말 안 듣냐?’ 이런 식으로 7여단장에게 사단장이 얘기를 막 해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여단장에게 사단장이 ‘네 말 안 먹히냐, 대대장들한테? 왜 모양이 안 좋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대대하고 7대대가 간방교 인근에 병력을 집중 투입해서 수변 일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면서 마구 화를 냈대’라고 7대대장과 11대대장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사단장이 엄청나게 화를 냈대. 그러니 우리는 잘해야 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주고받아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다시 임성근 사단장의 이야기가 녹취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녹취는 임성근 사단장이 사실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녹취가 드러나서 다행인네요.

임성근 사단장이 중심에 있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특검법이 오늘 소위에서 꼭 통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론이 있는 데서 주장하고 이야기하

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스케치를 마친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항목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조문별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지난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과 법원행정처에 검토를 요청한 사안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전문위원의 보고가 끝나면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안 1조와 2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입법 목적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및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등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대사 임명부터 사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의 소위원회 토론 요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원회 회의 때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들은 자진해서 이 특검과 관련된 업무를 회피 또는 제척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2조제2항을 신설하는 검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제1항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입니다—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라는 법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건에 공무원들이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수사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사건이므로 자수 또는 자백하는 경우에 형을 감면해 주는 등 수사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요건이고 자백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양형에 참작될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자수·자백하는 경우에 형을 감면해 주는 조항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 국방위 간사 등에 의한 수사 외압도 있는 만큼 국회 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의 경우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는 점, 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지휘·명령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은폐, 무마, 사건 조작 등으로 직무유기죄 또는 직권남용죄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한편 국회의원을 명문으로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법 문언상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지적하는 비판적 견해의

제시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전문위원께서 언급하신 세 가지 주제 관련해서 위 세 가지 사항 모두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자수·자백에 대해서 형법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두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검토가 됐는데요 형법에는 일반적으로 자수·자복의 임의적 감면입니다.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관여가 돼 있고 공무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내가 양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어야 자백을 하는 거지 형법의 임의적 감면으로는 그 자백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공무원들 형법 52조에 대한 특례를 두어서 자수·자백의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으로 두어서 관련 공무원들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게 어떤가 해서 그 조항을 제가 추진했던 건데 형법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임의적 감면을 말씀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형법에 동일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는 견해, 전문위원 지적에 동의합니다마는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적 감면으로 규정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 사건이 공직사회 내에서, 어떤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필요적 감면이라는 데 동의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 이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 김승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한석현** 일단 형법에는 자수가 임의적 감면으로 돼 있어서 필요적 감면으로 두자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반영하면 될 것 같은데 자백의 경우에도 필요적 감면으로 명시적으로 두자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성윤 위원** 예.

○**전문위원 한석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수뿐만 아니라 자백도 형의 필요적 감면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이성윤 위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그런 규정을, 이번 청문회 또 특검법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특별하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했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이 특검법 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 회피 또는 제척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이렇게 추가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지가 잘 살려진 그런 내용이라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우선 그러면 필요적 감면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법·부당한 상사의 명령에 만연히 따랐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지요. 또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법한 상사의 명령은 따를 필요가 없다, 그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면책 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의 확립된 판례가 있는데 이번 채 해병 순직 사건 또 수사 외압의 경우에는 사실은 군대라는 그런 체계상 혹은 대통령실이라는 엄격한 위계질서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따랐던, 수행했던 공직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공직자에게 자수 혹은 자백 시 반드시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조항이 특검법에 있다면 의외로 또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차장님, 혹시 제가 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소위원장 김승원** 물론 형법 총칙에 임의적 감면 규정이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법 조항에, 처벌 조항에 필요적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증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다른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나도 이례적이거나 혹은 위헌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형법 내용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론에서는 자백과 분리해서 자수와 자복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적 감경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는 자백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형의 참작 사유로만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법령상 말씀하신 것처럼 무고죄하고 위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백과 자수 모두에 대해서 필요적 감경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자수에 한해서만 필요적 감경 규정을 두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자수·자백 2개다, 두 경우 다 필요적 감면 사유로 하시는 게 어떻……

박균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균택 위원** 자백에 대해서도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사건의 특성을 생각하면 숨겨진 관여자가 자백을 하는 것은 자수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거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자수를 해야만 한다면 자수서를 받고 입건 절차를 거쳐서 봐주는 절차를 취해야 하는데 특검의 수사 기간이 짧다는 걸 고려한다고 치면 자수 절차 없이 자백

만으로도 충분한 배려를 받게끔 해 줘야 당사자에 대해서도 용기를 줄 수가 있고 또 특검 수사 진행에도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백의 경우에도 자수와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도 의견 잠깐……

○소위원장 김승원 예.

○서영교 위원 박정훈 대령하고 같이 수사를 했던 그분들은 위에서 압력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압력이 내려와도 우리는 그대로 간다. 만약에 박정훈 대령이 이것 이첩 보류하자라고 하면 그 밑에 있었던 중수대장이라고 그러나? 그분도 저 그것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잘못된 지시를 따라도 처벌받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김관진 때 잘못된 지시를 해서 전부 다 처벌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것에 의해서 단단히, 이번에 박정훈 대령과 그 수사단들은 단단히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알고도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잘못된 지시를 따른 것은 강력한 처벌 대상이다, 같이. 그래서 잘못된 지시를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밝혀 놓으면서.

그러나 잘못된 지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고 하면 정말 대통령실에서부터, 대통령 격노에서부터 시작됐을 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형법에 있지만 구체적으로 달아 놓는다면 세상을 바꾸는 데 또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저도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시를 따른 것은 형의 감면 사례지 그것이 잘못, 자백하고 자수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게 되지요. 그렇지만 충분히 참작하고 감면하고, 그것도 충분히 검토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잘못된 지시에 확실하게 저항한 그게 바로 이 사건의 시작이거든요. 박정훈 대령과 수사 관계자 분들의 이 뜻을 정확히 다시 한번 밝히고 가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전원이 자수·자백에 관한 필요적 감면 규정을 두는 것에 동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예.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아까 자백과 관련돼서 의견을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자백에 대해서 임의적으로나 필요적으로 감면 규정을 두는 것은 위증하고 무고죄에 한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범죄의 속성을 고려해 보면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범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요 위증하고 무고에 한정해서만 자백에 관해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만 추가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공판 단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차장님 어떠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것은 입법정책적 사항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좀 더 보충이 필요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요.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사대상 고위공직자가 특검 관련 업무를 회피하는 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하단에 있는 검토(안)인데요, 그러면 동의하신 거로 보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단에 있는 수사대상 범위에 대한 보충의견인데요.

서영교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수사과정에서 그리고 세상에 드러난 게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가 국회라고 하는 장을 이용해서 이 사건을 은폐하는 시도를 한 게 만천하에 드러난 거지요. ‘제가 국방부장관에게 전화한 적이 없지요?’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국방부장관이 ‘예, 전화하신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전화를 한 게 열일곱 번 또 국방부장관이 전화한 게 한 번 그래서 다 해서 열여덟 번. 그리고 시간도 엄청납니다.

이 과정은 국힘당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거나 그 관계자들에 연결이 돼서 수사 은폐에 개입하는 정황이 드러나서 이 부분을 수사대상에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수사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사대상이라고 하는 걸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신원식 국힘당 간사는 현재 국방부장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장관이 또 여기에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가 그때부터 해서 저는 수사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사대상을 좀 명확히 하는 과정이 있지요. 특검에는 수사대상을 아주 명확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명확히 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왼쪽에 보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등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사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힘당 국회의원들의 방해행위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국방부장관이 된 것 이런 내용을…… 사실은 국회에서 하는 역할들도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역할이 다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한 번 더 여기다가 소위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면서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 내용은…… 검토의견은 이게 그런 의견일 수 있는데요, 국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이 인지된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다면 제가 검토의견을 다 받아들이겠으나 그렇지 않아서 저희 소위에서 아까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원래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 있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전제로 이것은 제가, 전문위원의 의견과는 조금 다르지만 철회하는 것으로, 철회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박균택 위원 없습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6호에 서영교 위원님 말씀대로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 3조부터 5조까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석현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특별검사후보자로 선정하여 총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지난 소위 시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정의견 등의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난 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또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교 위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3조, 5조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은 안 6조부터 8조까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석현 특별검사 등의 권한 및 의무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른쪽 표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특별검사의 조직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은 특별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40명 그리고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이것 또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 한석현 이어서 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제1항과 2항은 특별검사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들과 그리고 수사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4항은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특별검사 등의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소위 때 안 제8조 1항과 2항 부분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요.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수사기간 연장 보고 외의 수사내용 공표·누설 금지를 규정하는 안 제8조와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이 가능하도록 한 안 제12조 간에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업무상 비밀누설이 금지되는 내용은 명확히 하고, 비밀이 아닌 경우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안 제8조제1항 부분입니다.

제정안의 수사대상 범위를 고려할 때 비밀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예시하는

것은 비밀누설 금지 관련 유사 입법례와 법기술적인 한계로 입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한 비밀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한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법원의 판례로서 정립되어 있는 형법 제127조에서의 구성요건인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누설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직무상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사내용 공표 금지와 관련한 안 제8조제2항 부분입니다.

수사과정과 수사내용이 명백히 분리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언론브리핑의 대상이 되는 수사과정에 관한 것이 8조 제2항의 수사내용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과정으로서의 주된 성격이 있다면 안 제12조에 따라 언론브리핑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석될 수 있도록 주의적인 법 문언을 추가하였습니다.

밑에 검토(안) 표를 보시면, 밑줄 친 부분입니다. 공표가 금지되는 수사내용에서 ‘제12조에 따라 언론브리핑의 대상이 되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은 제외한다’라는 법 문언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재판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공소유지 단계에서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지 않은 입법례가 있었던 만큼 이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8조제4항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법 문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비밀누설과 관련해서 이를 명확하게 한 점과 아울러서 8조와 12조의 관계를 규정한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공소유지 단계에서 영리행위 금지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래 다수의 특검법에서 다양한 견해를 취해 왔기 때문에 이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잘 정리한 것 같은데요.

○**박균택 위원** 겸직이 가능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1심 선고 후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수사 후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성윤 위원** 위원님 말씀은 같은 취지의 의미인데요.

이 취지는 우수한 특검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특검 기간이 오래되면 수사 능력이 있는 우수한 검사가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끝나고 완료된 후에 공소유지 기간은 겸직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보통 1심 후가 되겠지요.

○**박균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검토(안)에 의하면 수사완료 후니까 기소 후 1심부터도 영리행위가 가능하다는 그런 규정처럼 비치기 때문에 1심일지 기소 이후일지는 조금 더 분명하게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 혹시 속기의 편의나 토론을 위해서 발언권을 좀 받으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성윤 위원** 물어보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성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성윤 위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이게 문언상 읽히는 것은 1심, 기소 후에 공판과정에서도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걸로, 겸직이 가능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제가 제안한 취지는 현실적으로 우수한 특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완료된 후에는 겸직 금지를 해제시켜 주자, 그래야만 본연의 자기 일도 하면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거 아니냐. 그래서 시기를 1심 종결 시까지 그 정도로 명확히 해 주면 그 후에는, 항소심부터는 겸직 금지를 해제해 줘도 크게 무리도 없을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영리행위를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영향을 주거나 또 어떤 비판도 받는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김에 8조, ‘12조에 따라 언론브리핑의 대상이 되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사과정이라는 게 뭔지 몰라 가지고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 줄 수 있는지.

○전문위원 한석현 예?

○이성윤 위원 원래 제정안은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검토(안)은 ‘12조에 따라 언론브리핑의 대상이 되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랬거든요.

수사과정을 제외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한석현 이게 8조 2항에 따르면 수사내용을 공표 금지하도록 돼 있고 제12조에 따르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서는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공표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문언적으로는 수사내용과 수사과정이 명백히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체적인 경우에는 수사과정을 브리핑할 때 수사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8조 팔호 부분에서 ‘제12조에 따라 언론브리핑의 대상이 되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은 제외한다’라고 하면 수사과정으로의 성격과 수사내용으로의 성격이 일부 혼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12조에 따라서 언론브리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석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전현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승원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고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브리핑 자유가 12조에, 좀 이따 검토를 하시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애매하게, 정확하지 않게 규정된 측면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되어야 하는 8조 규정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됐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직무상 알게 된 볍령에 의한 비밀’ 이렇게 명확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언론브리핑 대상이 되는 범위의 경우에는 보다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8조에 의한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해당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언론브리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전문위원 보고와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정리를 할 겸 토론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15페이지 하단에 있는 제정안과 검토(안)을 보면 제정안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는 규정을 전문위원 검토(안)은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 이렇게 해서 그 비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한석현** 예, 그렇습니다. 형법 127조의 구성요건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로 넘어가면 2항에 특별검사등의 의무에 관하여 제정안은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을 전문위원 검토(안)은 ‘수사내용(제12조에 따라 언론브리핑의 대상이 되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은 수사내용 중에도 12조에 따라 언론브리핑 대상이 되는 것은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를 지금 담으신 것 같아요.

○**전문위원 한석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우선 검토(안)에 있는 9조 3항·4항, 11조가 맞나요?

18페이지를 보면 9조 3항 연장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인용규정이 맞는 건가요?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한석현** 맞습니다. 9조 3항에서 수사기간 연장사유 보고할 때는 수사내용을 누설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 규정을 제외하는 내용이고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거는 대통령께 보고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한석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대통령께 보고할 때는 수사내용도 다 보고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전문위원 한석현** 예.

○**소위원장 김승원** 4항도 그런 내용으로, 대통령이 특별검사에게 수사내용과 관련된 통지를 할 수 있다 그 규정을 두신 거군요.

○**전문위원 한석현** 예.

○**소위원장 김승원**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도 이때는 수사내용도 보고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두신 거고요.

○**전문위원 한석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제가 볼 때 브리핑의 범위를 좀 넓히고 그다음에 비밀의 범위를 법령에 의한 것으로 조금 제한을 둘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더 보장하는 측면으로 검토의견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위원님들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승원**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법령에 의한 비밀’ 이렇게 좀 구체화했잖아요. ‘법령에 의한 비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조금 듣고 싶은데요.

○**전문위원 한석현** 사실 ‘법령에 의한’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둔 것은 아니고요. 형법 제127조 부분의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판례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게 되면 해당 사안에서 이것이 비밀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그 구성

요건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실제 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명시된 사항에 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질을 봐 가지고 비밀로서의 가치를 가지느냐라고 하면 비밀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법령에 의한’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한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 제127조에서의 판례를 보면 좀 더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규정과 같이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서영교 위원 형법 127조에 관한 내용을 여기다 넣지는 않은 거지요?

○전문위원 한석현 예, 그 구성요건만 가져온 겁니다. 형법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의 주체는 공무원으로 돼 있고 여기는 공무원이 주체가 아니라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이 직무상 법령에 의한 비밀을 누설했을 때라고 해서 구성요건만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하면, 지금 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은 특검이 판단해서 하는 것은 다 브리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 한석현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브리핑을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으로 한정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한석현 예, 법문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으로 한정할 수가 있어요, 브리핑을?

○전문위원 한석현 그래서 지금 안 제8조 2항에 괄호 부분을 넣어서 관계를 약간 정리를 했고요. 그것을 또 법에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해서 열거적으로나 예시적으로 그렇게 규정할 수는…… 법기술상으로 그거는 무리라고 보입니다.

○서영교 위원 제 생각에는 브리핑 관련해서 법무부가 독소조항이니 뭐니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전에 특검에서 다 브리핑을 해 왔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여기에 연연하면서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 피의사실을 제외한 수사과정에 대한 브리핑이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바꾼다고 얘기하신 거지요? 그게 16쪽 밑에 있는 검토(안) 그건가요?

○전문위원 한석현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은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공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안 제8조 2항은 수사내용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하면 처벌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과정과 그다음에 8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사내용이 실제에 있어서는 혼재돼 있는 영역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를 좀 반영을 해서 8조 2항 부분의 수사내용에서 언론브리핑이 가능한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 부분은 제외한다고 해서 실제 혼재가 돼 있다 하더라도 언론브리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표의 범위를 다소 넓히는 방향으로 주의적인 규정을 두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른 위원님 혹시 더 토론해 주실 분……

저도 하나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법원행정처 차장님 보시기에 지금 8조와 12조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소위원장 김승원 12조는 ‘사건의 대국민보고’라고 해서 이전 특검법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 특검, 드루킹 특검과 아주 기재까지 똑같은 걸로 돼 있어서 12조는 사실 예전 특검법 언론브리핑도 크게 문제된 바는 없었기 때문에 규정 자체는 저는 인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8조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로 자구를 더 추가를 한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소위원장 김승원 이거에 대해서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혹시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 비밀누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형법상에도 공무원의 비밀누설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서의 비밀은 단순한 비밀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법령에 의한 비밀이라고 구성요건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에서도 비밀누설죄의 규정을 둔다고 한다면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처럼 형법상의 비밀누설과 궤를 같이해서 법령에 의한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이 8조에 대해서 제정안이냐 아니면 검토(안)이냐 한번 의견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검토(안)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체계정합성을 갖추는 게 좋다라고 의견을 가지신 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 주시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법원행정처 차장님 의견도 그렇고 검토(안)이 좀 더 명확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범위를 넓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쪽에 동의를 하시나요?

○박균택 위원 예, 동의합니다.

○전현희 위원 저는 8조의 법령에 의한 비밀누설 규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8조 2항 부분이 제가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물론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취지구나 이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언뜻 보기에는 규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2항 ‘제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부분도 법령에 의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고치면 안 될지 일단 한번 수정의견 제시하고요.

그리고 12조는 아직 논의를 하지 않았지만 12조 언론브리핑의 경우에도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 이렇게 하면 또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제8조의 비밀누설 금지되는 사항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우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이 가능하다, 12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12조에 그렇게 돼 있어서 브리핑은 하는데 비밀누설하고 자꾸 헷갈리고 피의사실 누설하고 헷갈리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전현희 위원처럼 피의사실이라고 하는 부분도 빠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피의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나 수사과정은 피의사실 누설이 아니라 수사과정 안에 녹아 있는 것은 여태껏 관례처럼 해 왔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가다 보면 혼란하고 복잡해지고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더 많아서 그대로, 기존에 있던 대로 그냥 가는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조에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 가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8조도 그 부분을 넣어서 가는 것이 지금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현희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이게 어떤든 만들어 가는 과정이나 그전에 해 왔던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브리핑을 못 하지도 않았고 그 브리핑 과정 속에서 이게 피의사실 누설이라든지 아니면 비밀누설이라든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과정을 브리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태대로 가고 8조는 2항을 그렇게 바꿔서 가는 형태로, 전문위원 의견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른 위원님들 바로 의견 발표가 좀 그러시면 한번 진행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검사등의 의무에서 ‘수사완료 후’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수사기간은 20일, 70일 그다음에 대통령 허가에 의한 30일로 특검발의안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발의되는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완료가 최장 120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윤 위원님께서 ‘1심 판결 선고 후’라고 제안을 다시 주신 건가요?

○**이성윤 위원** 이성윤입니다.

제가 염두에 둔 것은 ‘수사완료 후’ 그러면 120일 정도 완료 후에 공소제기, 공소기각 할 수 있는 팀이 있습니다. 이걸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공소제기 후 1심이 결론이 난 후에, 그 후에는 겸직을 허용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특검은 국민들의 관심사를 수사하는 검사고 수사대상도 국민들이 되게 관심 있는 것이고 또 특검의 청렴성에 대해서도 이 법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간에만 겸직금지를 적용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1심 선고 시까지는 특검으로서 청렴성 또 국민들이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특검이 영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변호사를 할 건데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1심 공소를 유지한다, 그건 좀 국민들이 보기애 용납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시기를 1심 선고 시까지, 명확히 결론이 났을 때까지는 겸직금지를 계속하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난 2심부터는, 항소심부터는 겸직금지를 풀어 주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 법에 의하면 한 1년 재판할 수 있잖아요. 1심은 6개월인데 많으면 1년 정도 특검이, 물론 고검장급 예우를 받기는 하지만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시기를 명확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될는지……

○**서영교 위원** 저는 아까 말씀처럼 1심은 6개월, 재판이 길면 1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한국조폐공사, 박근혜 국정농단, 드루킹 그리고 웃로비 이것은 겸직 규정을 ‘겸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걸 보면 3심 때까지인가요, 이게? 겸직 안 한 거지요?

○**전문위원 한석현** 예, 그렇습니다. 그 단서조항을 두지 않으면 완전 판결선고 전까지는 아예 금지가 됩니다.

○**서영교 위원** 정리될 때까지.

그리고 이명박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 때는 수사완료 후라고 했던 이성윤 위원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한석현** 그것은 1심부터 바로 겸직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심까지는 끝내 놓고 2심부터는 겸직을 해도 가능하다 그런 취지로 규정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서영교 위원** 사실은 고검장 대우를 받으면서 가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겸직이 가능하게 된 때는 대우를 안 받나요? 나라의 녹을 안 먹으면서 변호사를 하나요?

○**박균택 위원** 신분이 유지되는 한 인건비는 나가는 거니까 그것은 겸해서 받는 걸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겸해서 받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성윤 위원님의 취지는 완전히 동의하면서도 대신 이것은 길어야, 길게 해서 1년, 조금 더 길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건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빨리 끝내려면 겸직하지 않아야 되고.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사건이고 온갖 공무원들이 다 있고 대통령부터 꽉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공소유지를 위해 겸직할 수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안 되게끔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이게 역사에 남는 일들인데 중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은 그렇게 가고 나중에 못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든 검토를 해 볼 수 있지만 저는 겸직하지 않고 끝까지 올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장님, 혹시 예전 특검 재판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그런 통계나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금 당장 제공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요청하시면 저희가 준비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리고 재판기간을 3개월, 2개월, 2개월에서 차장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전문위원께서 6개월, 3개월, 3개월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이것도 훈시규정이라고 해서 1년씩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재판 업무에 오래 종사하셨으니까 경험칙에 의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선거재판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6개월, 3개월, 3개월로 규정은 돼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기간에 맞춰서 재판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사자들의 여러 증거신청이랄지 이런 것을 배척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다 보면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은 그 외에 특검법에서 법정기한을 두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개월 만에 1심 공판을 마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사회적 이목이 많은 사건이고 증거 제출에 있어서도 부동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해 진술자들의 증언을 청취해야 될 텐데 그 증언을 청취할 규모가 크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3개월 내에 재판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정말 훌륭한 특검이 와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기 부여, 유인책도 하나 두자는 이성윤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이 특검법의 앞날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는 그런 법이고 또 거부권을 행사할 때 분명히 트집을 잡는다면 ‘왜 특검이 영리행위를 겸직하게 하느냐’, 서영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고검장급 대우를 받으면서 변호사 활동을 한다’ 또 특검을 거부하는 사유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고려해 주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당장 합의가 안 되면 다음 넘어가고 다시 최종 의견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수한 특검을 유치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했는데 국민적 관심사도 있고 특검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단서조항 두는 부분은 제가 철회하도록……

○**박균택 위원** 만약에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수 인재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청렴성 문제를 서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친다면 사실심을 다루는 2심까지만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성윤입니다.

국정농단 특검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는 바람에 그 파기환송심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다 해 가지고 정말 그 기간이 한없이 늘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검이 저희한테 파기환송 이후에는 특검 신분을 벗어나게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의견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이것은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깔끔하게 가고, 말씀처럼 계속 늘어지는 경우 이런 것은 또 다른 고민으로 해결해 가고. 이것은 어떻게 수사를 잘할 건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와 브리핑, 수사에 집중하고 그 뒤의 것은 그다음에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이 유능하고 좋은 검사가 와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청렴성은 두 번째고요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한 거거든요,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그래서 얘기한 건데, 어떻든 지금은 그렇게 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특검의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와중에 자기 영리와 연결되는 것을 논의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그냥 중단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8조 4항 단서 검토한

부분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 9조부터 12조까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검사의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 그다음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소위원회 때 21대 때 재의 요구된 특검법과 비교할 때 이 제정안이 수사대상이 늘어났으므로 수사기간도 연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9조 제3항을 신설하고, 9조 제3항은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수사기간입니다—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30일 연장기간을 특별검사의 판단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3항을 4항으로 옮겨서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이성윤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검토(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전현희 위원 예, 동의합니다.

○이성윤 위원 동의합니다.

○박균택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특검이 빨리 시작돼야 되는 이유가 통신기록이 1년이면 말소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9조를 보면 20일 동안은 준비기간으로 되어 있는 테요. 이 준비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법안 내용의 취지는 그렇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전문위원 한석현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특검을 실시했을 때 수사준비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왔는지. 법 문구로 봐 가지고는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가 되더라도 재의가 되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통신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기한이 빠듯하거나 지나갈 수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문 그대로 해도 수사에는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위원 한석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사실 20일 이내에 수사준비를 마쳐 놓고 바로 시작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한석현 예전 BBK 특검법하고 그다음에 DDoS 특검법에 보니까, 지금 이 표를 보니까 준비기간에는 수사가 금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통신기록 확보하는 데 있어서……

○서영교 위원 통신기록 확보가 수사입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통해서…… 수사일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통신기록 확보가 수사준비 아닙니까? 수사입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임의수사든 강제수사든 수사일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예외조항 같은 걸 뒤져, 예를 들어 시간적으로 시급성이 있는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기간에도 해당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예외규정을 넣는 방법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BBK 때 그랬다 그랬지요?

○전문위원 한석현 예, 문구를……

○서영교 위원 BBK도 그랬지만 다른 때는 달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전문위원 한석현 다른 경우에는 달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 나뉩니다. 지금 상설특검법 제10조의 수사기간에 보면 ‘이 경우 준비기간 중에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구가 들어간 개별 특검법도 있고 아닌 개별 특검법도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상설특검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한석현 예.

○서영교 위원 BBK는 그렇게 문구가 들어갔고.

○전문위원 한석현 들어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다른 특검법에는요?

○전문위원 한석현 수사금지가 명문으로 돼 있는 것이 총 13건 중에 7건입니다.

○서영교 위원 지금 말씀처럼 상설특검은 그렇게 되어 있고, 상설특검에는 그 명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한석현 들어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다른 특검…… 우리가 15건 했나요, 그동안?

○전문위원 한석현 13건입니다, 개별 특검까지.

○서영교 위원 그중에 7건만 ‘준비기간에 수사할 수 없다’라고 명문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지 ‘준비기간에는 그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넣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명문 규정으로 ‘이 기간에는 수사할 수 없다’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인지를 사실은 7건 외에 수사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걱정이 된다면 ‘수사준비기간 중에도 필요에 따라서 수사할 수 있다’ 이렇

게 넣어 두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니면 그전의 사례에서 명문 규정을 넣은 7개를 빼고 난 곳들이 수사를 했다면 그냥 이게 그 사례에 준해서 가는 것이라고요. 넣지 않으면 그 사례에 준해서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것들도 명문 규정을 굳이 넣지 않았지만 수사 안 했다 그런다면 우리는 규정을 넣어서 필요에 따라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김승원** 관련 자료가 27페이지 하단에 있는데요, 그것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이 사안의 시급성과 또 중요성을 감안해서 박균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긴급성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수정해서 넣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저는 이게 기준에 있던 특검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기준에 있는 특검들이 명문 규정을 굳이 넣지 않고 그렇게 수사했다면 이것 그대로 그냥 가고 수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빨리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수사를 했던 전례가 특별히……

○**전문위원 한석현**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균택 위원** 그건 아무튼 전례를 들어 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서영교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처럼 뭐 바뀌었고 뭐 바뀌었고 그랬는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브리핑이 독소조항이라서 있으면 안 되는데 그동안 다 브리핑해 왔잖아요. 우리가 다 반박했는데 굳이 안 넣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대로 가면서 쟤네가 반박할 거리를 안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소위원장 김승원**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이렇게 준비기간하고 수사기간을 분리하는 이유가요, 만일에 준비기간 20일 내에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기간이 다시 짧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 수사기간을 70일밖에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당신들이 준비기간에도 했지 않느냐라고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수사의 적법성 여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기간, 수사기간을 둔 이유는 수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실 준비기간 20일 동안은 수사를 거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주는 이익은 위원장님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행위로 물리적인 준비행위, 사무공간 확보한다든가 인력을 확보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준비행위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가 있으면 달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 보면 준비행위를 수사기간으로 포함시켜 주면 수사기간이 20일이 빠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그런데 그걸 규정상 분명히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를

아예 남기지 않기 위해서 ‘수사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산일 방지를 위해 시급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넣어 놓으면 준비기간 기일은 보장이 되고 그러면서도 이 해석에 다툼은 없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닌지 그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전문위원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조폐공사 준비기간에 ‘수사금지’ 그리고 대북송금 ‘수사금지’ 이렇게 정확히 써 놨어요. BBK ‘수사금지’ 그리고 쪽 가다가 최순실 때는 수사금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국정농단과 드루킹 때는 준비기간에 수사금지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수사금지, 수사금지 넣은 것은 하지 말라는 거고 여기에는 준비하면서 필요한 건 하라고 준비기간을 확보해 준 거지 수사를 못하게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성윤 위원님처럼 특검 수사기간과 준비기간을 확보해 준 거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수사 못 했다, 안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딱 명문으로 넣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여기 명문으로는 안 넣은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래서 이대로 가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선 조금 체크해 보시고……

○**소위원장 김승원** 이것은 조금 후에 다시 최종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간 9조부터 12조까지 다 토론이 되신 거지요?

○**전문위원 한석현** 예.

위원장님, 재판기간을……

○**서영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승원** 예.

○**서영교 위원** 그때 국정농단 특검이 언론보도 나온 걸 보니까 박영수 특검이 ‘특검법을 잘 살펴보니 준비기간에는 수사를 못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꼭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는 것만이 수사가 아니고 그간의 수사기록을 읽어 보는 것 등 할 수 있는 한 빨리 수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여기에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건 굳이 금지규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때는 사람을 부르는 것 외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통화기록을 달라고 영장을 보내서 자료를 받아오거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해석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때 보도가 있어서, “박영수 특검 ‘20일 준비기간 동안 준비만 하면 국민께 죄송’, 이를 수사 개시 의지”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그걸 살펴봐 가지고 굳이 금지를 넣지 않는 것은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넣고 가면 어떨까 싶긴 하네요.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사기록을 받아서 기록 검토하는 것은 수사준비기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고요. 다만 채 해병 순직 사건 특검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화기록 확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통화기록은 임의로 제출받지 아니하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수사를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거라, 그것은 형사소송법 용어에 의하면 분명히 수사이고 저희가 20일을 수사준비기간으로 명명한 이상 그게 수사를 준비하는 기간이지 수사를 하는 기간은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비판 아니면 대통령실 쪽의 이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다른 특검은 전부 다 ‘수사금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물리적으로 용어상……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더 검토를 해서 한번 따져 본 후에……

박근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근택 위원 해석에 맡긴다는 차원에서는 서영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또 기준에 없던 조항들을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특검법 제정 내용들이 복잡해지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취지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 사건은 대통령실과 싸우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준비기간 중에 통화기록을 확보하려고 하면 영장 청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영장을 청구하는 이 절차에서부터 이걸 준비기간 중에 수사할 수 없다는 식의 부정적인 의견을 자꾸 제시하면서 방해하는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 이걸 생각하면 이 사건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서 분명하게 법에다 취지를 써 주는 것은 어떨까 그 생각이 한 번 더 들고.

이성윤 위원 말씀처럼 준비기간 중에 수사를 했으니까 이때부터 수사기간이 포함된다라고 해 가지고 또 수사기간에 대한 시비를, 준비기간이 줄어들고 수사기간이 늘어나는 시비를 또 불러올 여지도 분명히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문제를 아예 해소해주고 가는 것이 이 사건의 특성에 맞는 입법이 아닐까 그 생각을 좀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진행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인데요, 저희가 2시에 정책의총이 있고 1시 반에 위원님들 아시는 그런 간담회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12조까지 했고 앞으로 22조까지 한 다음에 축조심사까지 있을 텐데 소위를 언제까지 하고 그다음에 점심 하신 다음에 의총 직후에 연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그걸 먼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근택 위원 아마 이 이후로는 쟁점이 될 만한 조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마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른 분,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조 대국민보고 브리핑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제8조의 비밀 누설 금지 사항 외에 대해서는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건의, 검토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전현희 위원 언론브리핑 사항의 범위를 제8조의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는 사항 외에는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까 8조 논의를 할 때 이 12조에 관해서 제가 의견을 똑같이 개진을 했는데요. 지금 이 조항의 논의 사항에서 이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8조와 12조는 연계가 되어 있으므로, 아까 8조도 일단 1회독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정리하기로 했는데요. 그때 그러면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3조부터 17조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13조 이후부터 말씀하신 부분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10조의 재판기간 관련해서는 혹시 6개월, 3개월, 3개월로 수정의견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처럼 3개월, 2개월, 2개월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한석현**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들어 보면 6개월, 3개월, 3개월로 다 이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6개월, 3개월, 3개월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승원** 예,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좀 전에 의결을 해 주신 부분이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자백과 관련돼서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법제가 자수하고 자백은 명백하게 구별을 해서 자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형법상에 임의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고요. 특별법의 경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수에 한정해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백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상의 감경 규정이 아닌 일반적인 양형 요소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위증죄와 무고죄에 있어서는 자백에 있어서 필요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서의 필요적 감면 규정은 해당 사건에서 본인이 자백을 한 경우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증언을 하거나 본인이 고소를 했던 당해 사건에 있어서 자백을 한 경우에만 그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해 사건의 자백에 있어서 감면 규정을 두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저희 재판실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백의 경우가 다양한 것이 1심에서 자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1심에서 부인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자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항소심 끝까지 가면서 계속 부인을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자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자백의 경우에 필요적 감면 규정을 두게 된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2분의 1 감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형 판단의 영역

으로 둬야지 자백의 경우에 필요적 감면 규정을 두는 것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외람되게 말씀 올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차장님, 예컨대 그 수사 대상자가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그다음에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자백이겠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기소가 되었을 때 이걸 필요적 감면 규정으로 두면 재판장이 2분의 1까지 일단은 감경을 해야겠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무조건 감경을 해야 되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그게 어떤 위법사항이라든가 위헌사항이 있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렇지는 않은데요, 자백의 경우가……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부인하다가 자백하는 경우에 검사가 구형을 적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특검법에 한정해서만큼은 그렇게 자백한 경우에 법원도 필요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해야 예컨대 그 수사받는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자백을 한다라는 그 취지를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부인하다 자백하는데 특별검사라든가 특별검사보가 이걸 갖고 구형을 얼마를 내릴지 또 이게 법원에 어떤 영향이 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점을 아까 좀 배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자백과 관련해서 이것을 필요적 감면 사유로 두는 경우는 예외적인, 위증과 무고라는 특수범죄, 그것도 당해 사건이 아닌 본인이 문제됐던 사건의 경우에 한해서만 자백의 경우에 필요적 감면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자백을 법정의 감면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의 설명이 빠진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요소는 아니고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재판실무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부터 계속 부인을 하고 있다가 항소심 직전 단계에서 자백을 하는 사안의 경우에 이것을 정말 진정한 자백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두는 것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할 수 있지 자백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필요적 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저는 법원행정처 차장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 기울여야 되고.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자백은 수사와 이 과정 속에서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해서, 저게 벌써 다 보이는 건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수가 있나요? 어디 도망가서 숨고 막 이런 데서 자수하러 오는 건 괜찮은데 이 수사 내용에 자수라고 하는 게 있나요, 자수할 만한 게? 누가, 이시원이

이렇게 자수할 만한 내용이 있나요?

○**박균택 위원** 자수 개념이 도망갔다가 스스로 수사에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있던 죄를 먼저 자복한다는 개념을 아마 포함하는 이런 의미이기는 할 것 같은데요.

○**서영교 위원** 저는 특검이니 만큼 수사를 잘하고 그래서 나중에 양형에 반영되는 게 맞지, 자백하고 자수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하지만 검사가 나중에 잘해 줄게 이렇게까지는 되는데 이걸 굳이 여기서 넣는 것이 특검하면서 맞나 이런 생각을 아까 우리가 의견은 모아 나간 것 같긴 하지만 들어 봐야 되고, 자수와 자백이 자기의 위증과 무고 사건에 한해 있는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원행정처 차장님은 1심, 2심 관계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실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라서 1심, 2심 상황이랑 다르긴 한데…… 저는 이것도 좋은 경향을 이끌어 내긴 하지만 아무리 특별한 거지만 법에 넣는 게 맞나 이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성윤 위원** 입법례도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 특별법에 보면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에 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서영교 위원** 그 사례는 예를 들면 내가 그때총을 쐬어요. 그런데 숨어 있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저 사실 이만이만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봐서 하는 경우라……

저는 취지는 너무 동의하는데 이게 특별검사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그게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은 그것 없이도 충분히 찾아 나갈 요인들이 있는데 넣어서 논란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지금은 쟁점 정리를 빠르게 해 가면서 22조와 부칙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예측컨대 저희가 더 토론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다시 하는 게 어떨까,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서영교 위원** 정회를 해서 의견 소통을 좀 하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고 속개 시간은 추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안 18조부터 22조 및 부칙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재판관할과 이의신청 그리고 별칙 및 부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전문위원 한석현 18페이지 9조 1항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냐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19쪽 제12조 부분에서 지금 원안은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전현희 위원님께서 8조 1항에 따른 비밀 외의 수사과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우선 9조에 대해서 토론하시고 그다음에 12조와 8조는 서로 연관이 돼 있으므로 그다음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9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1항에 준비기간 조항을 두고 있고 2항에 수사기간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이 갖는 특성을 생각하면 7월 19일 이전에, 보존기간이 1년에 불과한 통화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 확보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 이것을 반영한 법률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기간 중에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하고 또 준비기간 중에 사용한 수사기간은 2항에서 얘기하는 수사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령 '수사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두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9조의 부분에 대해서는 박균택 위원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8조와 12조 관련해서는……

○소위원장 김승원 전현희 위원님, 그것은 이것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말씀 주시면……

○전현희 위원 동의합니다, 박균택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박균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7월 19일은 채 해병 순직일이고 통화가 급격스럽게 이루어진 날은 7월 하순부터 8월 초 사이, 정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소위가 점심시간도 아껴 가면서 이렇게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균택 위원님에 동의하고.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이에 대한 의견 아니면 예상하신 문구 같은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9조제1항 단서로 규정을 두어서, 원칙적으로

수사준비기간에는 수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문으로 두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으로 하는 것이 체계상 적당하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조와 12조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8조 1항의 ‘법령에 의한 비밀’로 명확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2항에 대해서도 내용이 좀 복잡해서 간결하게 법령에 의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법 통과를 위해서 검토(안)에 그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조의 언론브리핑과 관련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국민들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언론브리핑의 범위를 조금 확장해서 8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외에는 다 브리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 법의 원활한 또 신속한 통과를 위해서 그리고 향후에 국회나 언론에서 논란의 여지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2조의 안을 그대로 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그러면 위원님, 검토(안)이 아니라 원래 있던 안……

○**전현희 위원** 12조는 원안이고요.

○**서영교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리고 8조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안)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15페이지 하단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규정을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전현희 위원**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에 16페이지의 8조 2항에 대해서는 제정안과 검토(안)이 있는데 어느 것을……

○**전현희 위원** 검토(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검토(안)에 동의하신다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신다는 것이고요?

○**서영교 위원** 원래 제정안이라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8조는 검토(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12조도 지금 검토(안)이라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12조는 제정안.

전 위원님, 뜻이 맞으신 거지요?

○**전현희 위원**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른 위원님도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수, 자백의 경우의 필요적 감면 규정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차장님의 의견도

주셨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논의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이 사건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이른바 권력형 비리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안심하고 자수를 해서 범죄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수, 자복의 특례를 뒀으면 했는데 다만 법리적인 문제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영교 위원** 그런데 단 형법에 원래 규정되어 있는 자수, 자복 등의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여기에도 규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의 특성상 자수하는 분에게는 꼭 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검토의견으로 달아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소위를 나중에 속기록을 통해서 혹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게 되는 수사 대상자라든가 혹은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원에서도 정말로 반성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한 자들에 대해서는 자수, 자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과 통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영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점을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도 알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57조, 5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조문별로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상세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조문 제목을 읽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제8조(특별검사 등의 의무), 제9조(수사기간 등), 제10조(재판기간 등),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3조(보수 등), 제14조(퇴직 등), 제15조(해임 등), 제16조(신분보장), 제17조(회계보고 등),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제19조(이의신청), 제20조(별칙), 제21조(별칙), 제22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유효기간),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제1조부터 제22조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상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회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김승원 박균택 서영교 이성윤 전현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석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